

성운대학교 대학평의회 회의록

(2022학년도 6차 대학평의회 회의록)

평의원정수	11명
재적평의원	11명
참석평의원	8명

1. 일 시 : 2022년 12월 27일 15:00

2. 장 소 : 성운대학교 충효관 2층 세미나실

3. 임원 출석현황

○ 참석임원

- 교내평의원(7 인) : 오승환, 최영희, 강성률, 박선희, 임나현, 최은아, 윤명호,
- 외부평의원(1 인) : 정수환

○ 불참임원

- 내부평의원(2 인) : 손소연, 최지호
- 외부평의원(1 인) : 김한양

4. 안 건

(1) 학칙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

5. 회의내용

15:00 정각에 의장이 평의원정수 11명에 재적평의원 11명, 참석평의원 8명으로 성원됨을 확인한 후 개회를 선언하다.

의장(오승환) : 금일 대학평의회 회의는 사립학교법 제29조와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20조의8에 의거하여 평의원정수 11명에 재적평의원 11명, 참석평의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성립을 확인한 후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장(오승환) : 금일 회의안건은 학칙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부된 회의자료를 검토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서 명	평의원	오승환	평의원	최영희	평의원	강성률	평의원	박선희	평의원	임나현	평의원	최은아
	평의원	윤명호	평의원	정수환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전원 : 회의 자료를 검토하다.

평의원(최은아) : 금일 안건인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은 첫 번째, 성적 등급별 분포 비율 조정에 따른 개정, 두 번째, 복학생의 등록금 납부 기한 정정에 따른 개정입니다.

의장(오승환) : 간사의 설명에 대하여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박선희) : 이번 학칙 시행세칙 개정은 성적 산출 시, 성적 등급별 분포 비율 조정 및 오기재 된 복학생의 등록금 납부 기한 정정 등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학사 운영의 명확한 기준 명시를 위하여 성적부여 기준 등급별 분포 비율을 조정하고 기존 학칙 시행세칙의 부정확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금일 개정(안)을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찬성합니다.

평의원(강성률) : 박선희 평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평의원(정수환) : 강성률 평의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합니다.

의장(오승환) :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 발의와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평의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살펴서 의견을 기다린다.

의장(오승환)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찬반 의견을 서면으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참석위원 8명 중 8명 찬성 표결함)


간	평의원	오승환	평의원	최은아	평의원	강성률	평의원	박선희	평의원	이바라	평의원	최은아
서	평의원	원영호	평의원	정수환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의장(오승환) : 저를 포함한 참석한 평의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학칙 시행세칙 개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의결합니다. 이로써 성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대학 평의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폐회선언


이상으로 2022학년도 6차 평의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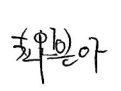
성운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오 승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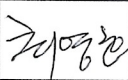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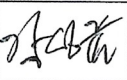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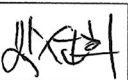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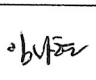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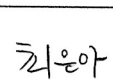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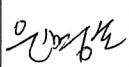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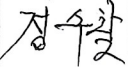
부의장 최 영 희 


평의원 강 성 름 


평의원 박 선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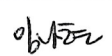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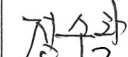
평의원 임 나 현 

평의원 최 은 아 

간 서 명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윤명호 

평의원 정수환 

간 서 명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최은아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붙임]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p>제15조(성적산출) ① ~ ② <생 략> ③ 성적평가의 방법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상대평가의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r> <th>등 급</th> <th>A등급 이상</th> <th>B등급이상 (A+B)</th> <th>C등급이하 (C+D+F)</th> </tr> <tr> <td>구성비</td> <td>30%이하</td> <td>70%이하</td> <td>30%이상</td> </tr> </table> <p>④ ~ ⑥ <생 략></p> <p>제36조(복학생의 납입금) 복학이 허가된 자는 그 학기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필한 후 <u>중간시험 이전에</u> 휴학한 학생은 납입금 없이 복학 할 수 있다.</p>	등 급	A등급 이상	B등급이상 (A+B)	C등급이하 (C+D+F)	구성비	30%이하	70%이하	30%이상	<p>제15조(성적산출) ① ~ ② <생 략> ③ -----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r> <th>등 급</th> <th>A등급 이상</th> <th>B등급 이하 (B+C+D+F)</th> </tr> <tr> <td>구성비</td> <td>30%</td> <td>70%</td> </tr> </table> <p>④ ~ ⑥ <생 략></p> <p>제36조(복학생의 납입금) ----- ----- <u>수업일수 1/4 이내</u>에 ----- -----</p>	등 급	A등급 이상	B등급 이하 (B+C+D+F)	구성비	30%	70%	<p>• 성적 등급별 분포 비율 조정</p> <p>• 복학생의 등록금 납부 기한 정정</p>
등 급	A등급 이상	B등급이상 (A+B)	C등급이하 (C+D+F)													
구성비	30%이하	70%이하	30%이상													
등 급	A등급 이상	B등급 이하 (B+C+D+F)														
구성비	30%	70%														

간 서 명	평의원	모승환	평의원	권영환	평의원	김영준	평의원	박선희	평의원	이내현	평의원	최민아
	평의원	민영석	평의원	정우환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평의원	